

산업·일자리 전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위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124
----------	-------

발의연월일 : 2026. 2. 26.

발 의 자 : 김위상·김선교·신성범
박성훈·김은혜·이종욱
신동욱·김성원·김미애
김기현·박충권·김형동
의원(12인)

제안이유

최근 화력발전, 석유화학, 철강 등 재래식 산업구조와 에너지체계 등이 급격한 전환을 겪으면서 관련 사업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의 쇠락 현상이 뚜렷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는 산업구조 변화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기업·근로자·지역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러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사업 단위로 고용위기를 완화하고 사업을 전환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임.

이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등 에너지 전환을 겪는 지역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철강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성 등으로 급격한 산업구조 전환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조사·대응계획수립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세계적 공급망 재편성에 따른 산업·일자리 전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진흥, 산업·일자리 전환사업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산업·일자리 전환지역의 지원 및 특례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안 제4조).
- 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일자리 전환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 라. 산업·일자리 전환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을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 마. 대체산업사업자의 지역주민 우선고용, 대체산업사업자의 우대 지원, 지역기업의 우대 등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 바. 정부는 산업·일자리 전환지역의 경제 진흥 등을 위하여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기금을 운용·관리하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 사. 산업·일자리 전환지역에 대한 교부세 지원의 확대, 국고보조금 인상지원,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와 규제자유특구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산업·일자리 전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세계적 공급망 재편성에 따른 산업·일자리 전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진흥, 산업·일자리 전환사업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일자리 전환사업”이란 철강, 석유화학, 석탄화력발전 등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 세계적 공급망 재편성에 따라 환경개선, 지역산업 재편 및 일자리 전환이 함께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2. “산업·일자리 전환지역”이란 산업·일자리 전환사업이 있거나 있었던 지역 및 그 인접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산업·일자리 전환사업 근로자”란 산업·일자리 전환사업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근로자와 산업·일자리 전환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4. “대체산업”이란 산업·일자리 전환사업을 대체하여 산업·일자리 전환지역 주민의 소득을 증대하거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

5. “대체산업사업자”란 산업·일자리 전환지역에서 대체산업을 조성·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일자리 전환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산업·일자리 전환사업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의 개선과 재정투자, 관련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산업·일자리 전환지역의 지원 및 특례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산업·일자리 전환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일자리 전환지역에 대한 지원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업·일자리 전환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일자리 전환지역 지원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2. 산업·일자리 전환사업 관련 피해 및 대책에 관한 사항

3. 산업·일자리 전환사업 근로자의 고용·취업 현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산업·일자리 전환지역의 경제 진흥 및 주민 생활 향상에 관한 사항
5. 산업·일자리 전환지역에 대한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일자리 전환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주민참여) ① 정부는 산업·일자리 전환지역의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제안 플랫폼을 통하여 제안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사업)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일자리 전환지역의 지역 발전 및 고용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평가
2. 산업·일자리 전환지역의 창업 촉진 및 고용 지원
3. 대체산업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육성
4. 지역에 특화된 산업 및 서비스 등의 발굴·육성
5. 그 밖에 산업·일자리 전환지역의 경제 진흥 및 주민생활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원사업의 추진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원사업의 연계·우선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일자리 전환지역에서 산업전환, 고용지원, 인력양성, 창업, 판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연계하여 수행하고, 이를 우선적으

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일자리 전환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환경을 보전하고 산업·일자리 전환사업에 따른 환경오염 등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이하 “환경보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역개발계획(「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을 말한다)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시·도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환경보전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보전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환경보전계획의 수립과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환경영향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산업·일자리 전환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산림·식생(植生)·생태계·수자원 등 자연환경에 관한 사항
2. 산업·일자리 전환사업 관련 환경오염에 관한 사항

3. 인구·산업·상하수도 등 사회환경에 관한 사항

4. 산업·일자리 전환사업이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보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환경영향조사의 실시와 그 결과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역주민 등에 대한 지원) ① 대체산업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산업·일자리 전환사업 근로자와 산업·일자리 전환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② 대체산업사업자는 산업·일자리 전환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 농산물·수산물·축산물 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제12조(대체산업 등의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일자리 전환지역의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고, 해당 대체산업을 육성하는 데 드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체산업사업자가 산업·일자리 전환사업 근로자 또는 지역주민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지역기업의 우대) 대체산업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

· 물품·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산업· 일자리 전환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제14조(지원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산업· 일자리 전환지역의 경제 진흥, 산업· 일자리 전환사업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 일자리 전환지역 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3.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기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 부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 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제1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산업· 일자리 전환지역의 주민과 산업· 일자리 전환사업 근로자의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
2. 대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3. 대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융자·투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금융지원
4. 대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홍보
5.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6.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7. 그 밖에 산업·일자리 전환지역의 경제 진흥 및 지역주민 생활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제1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④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교부세 지원의 확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일자리 전환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세를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지원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기획예산처장관은 산업·일자리 전환지역의 경제 진흥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20조(규제자유특구에 관한 특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일자리 전환지역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5조에 따른 규제자유특구로 우선 지정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일자리 전환지역 경제의 전략적 진흥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건의에 따라 산업·일자리 전환지역이 아닌 곳에 규제자유특구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제21조(조세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일자리 전환지역의 개발 촉진과 주민 생활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